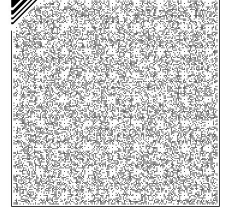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8.28.)
- 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8.28.)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기초의료보장과장, 약무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미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조달청장,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한국병원약사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박영호** 서기관 **이선주** 보험약제과장 **양윤석** 전결 2020.8.31.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2803 (2020. 8. 3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56 팩스번호 044-202-3935 / emile05@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